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촌활력부 공고번호 제2021-5호

2021 성공귀촌설계아카데미 운영단체 모집 공고

농업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현장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미래 설계를 돕고,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고자 2021 성공귀촌설계 아카데미 운영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성공귀촌설계아카데미 운영단체 공모
- **사업기간 :** 2021. 4월 ~ 11월
- **총사업비 :** 135,000천원 ※ 자부담 100천원 별도
- **지원사업 유형**

사업유형	교육내용(예시)
귀촌 이해	- 중장년층, 은퇴자 등의 농촌이해를 위한 맞춤형 귀촌 탐색, 도시농업 교육 등 - 재배기술, 영농실습, 지역이해 등 귀농귀촌 기초소양교육 및 현장체험 실습 등
정착 탐구	- 농촌생활기술 등 정착에 필요한 실무 능력 향상,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를 통한 지역융화, 농산업분야 자격제도, 가공, 유통, 농촌체험, 농촌융복합산업 등 비즈니스 모델 사례탐구, 창업 준비 및 경쟁력 강화, 농촌형 일자리 탐색 및 체험
농촌전문가양성	- 주민강사, 마을활동가, 실무자, 마을리더, 멘토 등 인력양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자유주제	- 생태가치, 문화예술, 도농교류, 공유경제, 농촌공동체 돌봄, 인문학, 주민과의 교류 등 성공 귀촌을 돕는 자유로운 주제

※ 제시된 유형별 교육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절대적 기준이 아님.

- **기타사항**
  - 결과보고회 시 우수사업 단체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표창 수여
  -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교육 컨텐츠로 활용 및 정책 연계

2 교육기관 공모

□ **교육기관 공모**

- **공모기간 :** 2021. 4. 8.(목) ~ 4. 22.(목) 17:00, 15일간
- **선정규모 :** 10개 교육단체 내외(135,000천원 이내 : 500천원 × 270명)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농업·농촌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민간전문기관, 단체 등 ※고등교육법(제2조), 평생교육법(제2조)에 의한 교육시설은 지원불가
- **지원범위 및 조건 :** 단체당 1개 사업, 교육인원 수 × 500천원 ※단체당 최대지원금 15,000천원
- **공고매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등 공지

□ **추진절차**

교육단체 공모·선정	→	협약·교육생 모집 (홍보, 설명회, 교육생 모집 등)	→	교육운영 (교육진행, 현장관리 등)	→	평가회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	교육실적 등록 (농업교육포털)
4월		5월		5월 ~ 10월		11월		12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 및 운영 등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심사

- **평가위원 :** 해당분야전문가 7명으로 위촉
- **선정절차**

공 모	→	정량평가	→	정성평가 (제안서평가)	→	단체선정 결과발표	→	교육계획 협의 및 조정	→	협약체결
~4/22		4/23		4/26		~4/28		~5/4		~5/6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점수 : 100점 만점
- 교육단체의 역량, 명확한 성과목표 제시, 달성의지 및 활용가능성 중심으로 선정

구 분	배점	내 용
정 량 평 가	25	- 교육배려지역(※붙임3 참고), 교육운영실적, 운영인력등
정 성 평 가 (제안서발표 평가)	75	- 단체역량, 현장성, 창의성·독창성, 예산편성, 과정운영, 교육생관리, 사후관리, 코로나19대응 방안 등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선정기준 : 70점(정량 + 정성) 이상 고득점순(9개 단체 내외)

※ 예산범위 내 단체 선정, 적절한 단체 또는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교육단체별 개별통지
- 협약체결
  - 선급금 70%이하, 사업완료 및 정산 후 잔금 지급
  - 모집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될 경우, 교육단체와 유통진흥원 협의 하에 개설여부 결정
  - 승인된 교육계획은 임의변경 불가
  - 교육현장에서의 사고 및 안전관리는 수탁교육기관의 책임

※ 교육단체 선정 후 교육과정, 지원금, 인원 등 일부를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음

4 교육구성

○ 교육인원 : 교육단체별 최소 20명 이상 30명 이내

※ 모집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교육대상 : 귀농귀촌희망자, 농업인, 농촌주민, 활동가 및 리더, 농산업 관련법인 관계자 등

○ 모집기간 : 교육단체별 개강 7일전까지

○ 교육시간 : 10주 이내 단기과정, 50시간이상 구성

○ 교육방식 : 혼합형 교육(집합 + 비대면 병행)

- 참여형 이론 30%, 실천토론 20%, 현장교육(실습, 체험, 사례 등)은 50%이상 구성
-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 교육, 소그룹 현장교육 등 방식 병행
- 2회 이상 우수 귀농귀촌공동체 방문 및 체험 실시

○ 세부내용

- 사업유형에 따라 과정명, 교육목표, 교육운영, 예산 등 세부내용 계획 수립
- 지원사업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자유주제 선택하여 작성

6 교육운영

○ 인적기준

- 해당 교육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확보 및 교육지원 조교 및 보조원 배치
- 강사수 적정 확보(1인 강사에게 과다한 강의시간 배정 금지)
- 실습·체험·사례·견학·토론 중심의 강의 개설

○ 시설·설비기준

[학원, 직업 훈련기관 의무사항]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 음식섭취금지* • 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중단 ①안②안 중 선택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음식섭취 금지	•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실외 기준	500명 이상 금지	100명 이상 금지	100명이상 금지	50명이상 금지	10인이상 금지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 운영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음식 섭취 허용					

- 코로나19 단계별 의무사항 준수하여 추진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협력 체계 구축
  - 교육기관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과정,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 받도록 안내
- 코로나19 단계별 강의실 확보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1명당	2.5㎡	4㎡	4㎡	8㎡	집합금지
30명 기준	75㎡	120㎡	120㎡	240㎡	집합금지

- 교육과정 활동에 필요한 실습장 1인 15㎡이상(임대 및 외부 실습장소 가능)

※ '1인 15㎡ 이상'은 경기도민텃밭의 분양기준 준용함

※ 실습장 면적이 코로나19 단계별 면적에 미달할 경우 분반수업 등 대안제시

※ 코로나19 단계에 따른 집합행사(개강식, 오리엔테이션, 특강, 체육대회, 수료식 등) 비대면 개최

7 기타운영사항

○ 개강식, 수료식 및 오리엔테이션 : 교육단체별 일정에 따라 추진

○ 교육과정 운영(5월~10월)

○ 교육생 만족도 조사

- 교육운영, 강사, 교육시설, 실습 등 운영전반에 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회(11월)

- 다양한 형식의 결과물(과정결과물, 사진, 동영상, 참가자후기 등)이 반영된 결과보고서 제출

- 우수사업 단체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표창 수여
- 2021년도 교육운영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 2022년도 교육운영 방향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시간으로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 자격 부여에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에 수료생 정보입력)

8 예산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에 따름.

9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 고
신청서류	USB 메모리		1개	- 제출서류 일체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 제출
	단체(법인) 현황 서류		각 1부	- 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허가증),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등 단체설립 근거 서류(원본대조필 날인)
	신 청 서		1부	- <서식 1> 지원신청서
	신청단체 소개서		1부	- <서식 2> 단체(법인) 소개서
제안서류	정성평가	교육운영 계획서	각 8부	- <서식 4> 교육운영 계획서 - 한글(hwp) 파일로 작성 - A4 사이즈, 단면인쇄
		교육운영 제안서 (발표자료)	각 8부	- 파워포인트(ppt) 파일로 작성 - 단면인쇄, 컬러인쇄 - 상철(위로 넘기기) ㅇ ㅇ ㅇ (상 철) ㅇ ㅇ ㅇ 「2021 성공귀촌설계아카데미」 교육운영 제안서 ㅇ ㅇ ㅇ 단체
	정량평가	운영인력	각 1부	- 전담인력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제출
		실적증명서	각 1부	- <서식 3> 귀농귀촌·농업농촌 교육 실적증명서 ※진흥원 위탁 교육 실적증명서는 생략가능

○ 접수기간 : ~ 4. 22.(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6층 (우편번호 16626)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내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10 기타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교육과정 운영 중 예산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경 승인 요청 및 승인 완료 후 해당사항 시행

○ 공고내용, 일정, 지원예산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문 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촌활력부 Tel. 031-548-2645

붙임 1. 2021 성공귀촌설계아카데미 운영단체 공모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2. 2021 성공귀촌설계아카데미 운영단체 평가기준표 1부.
3.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부. 끝.